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92

발의연월일: 2020. 10. 5.

발 의 자: 백종헌・지성호・김용판

구자근 • 한기호 • 임이자

최춘식 • 이주환 • 서일준

이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종전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 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33조의 4로 개정(2019.12.23.)되었으나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에 따라 예 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3제1항). 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의3제1항 본문 중 "제33조의2"를 "제33조의4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	제31조의3(예방접종 여부의 확인)
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	①
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	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	
한 법률」 <u>제33조의2</u> 에 따른	제33조의4
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	
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	
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.	
다만,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	
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	
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	
에 확인하여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